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

협회는 지난 6월 19일 통신개발연구원의 대회의실에서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체신부 통신정책국의 조규조계장과 박근호계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정책'과 '전기통신기기의 인증제도 개선'에 대하여 심도 깊은 설명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한미통신회담등의 결과로 인한 통신시장의 개방, 민간자율에 의한 표준제정, 형식승인제도의 완화에 따라 장시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정책에 관한 발표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설명회였다고 판단된다. 설명회의 요약에 대해서는 아래 요약문을 참조바라며 이번 설명회를 위해 도와주신 통신개발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정책

현재 전기통신분야의 표준화 동향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표준화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증대, 통신기술의 급속발전에 따른 제품의 Life cycle 단축 및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국제표준화의 필요성 증대등으로 인하여 표준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제정 전담기관들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더우기 국내의 경우에는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많은 사업자의 출현에 따라 표준화의 대상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화에 따라 타국의 표준화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케 되었다.

국내 표준화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주도는 배제하고 민간 자율에 의한 표준화를 추진토록 유도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도 표준화 전담기구인 한국통신기술협회가 설립되어 민간차원에서 개방되고 공정하게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며 국내 취약분야의 표준연구는 ETRI의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TTA에서 적합성 검토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국내 표준제정에 따른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운용된다. 이 세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정된 표준화단체에서 표준(안)을 작성하여 국가표준 승인신청을 하게되면 표준화협의회(체신부내)에서 표준(안)을 검토하여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권고표준으로 체신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고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내용은 수용되게 된다.

국내외의 표준화 동향 및 정책 방향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일본의 HATS Conference, GATT TBT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되었으나 이의 내용은 생략키로 한다.

전기통신기기의 인증제도 개선

전기통신기기의 인증을 시행하는 목적은 첫째, 통신망을 외부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둘째로 통신기간 호환성의 확보,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집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에서 형식승인 제도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형식승인제도는 198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시행에 의하여 시험검사 비용절감, 시험기간의 단축 및 제품 생산력 향상등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정된 품목(9개 품목)만이 적용되어 왔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완화하여 전기통신기자재 전품목에 대하여 적용할 것이다. 시험기준 완화에 따른 기기간의 호환성 확보는 민간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도 시험검사설비를 갖춘 업체나 단체가 신청할 경우 그 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하여 줄 것이다. 외국의 시험기간도 물론 같이 적용된다.

형식승인 제도의 개편과 함께 국가권고표준에 대한 인증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권고표준을 발표하고 이에 적합한가를 시험하여 인증번호 및 인증 마크를 부여토록 할 것이다. 형식승인제도의 완화에 따라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외국제품의 다량유입이다. 국내 전기통신산업의 보호측면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보완할 계획이며 특히 기술적으로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제도의 변경과 시장의 개방에 따라 관련업체의 많은 조언이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정책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을 기다리겠다.

두 연사의 설명이 있은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개정된 형식승인 제도 및 인증제도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 그중 몇가지를 예로 들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한다.

--- 질의 및 응답 ---

질의 : 불요파 검사기준이 가정용과 사무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Class A 와 Class B 가 있는데 왜 가정용을 기준으로

응답 : 현재 국내의 EMI 수준이 아주 취약하다. 이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준을 강화했다. 각 업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부탁한다.

질의 : G-4 FAX 의 경우도 EMI 규정을 가정용으로 할 것인가?

응답 : G-4 FAX 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될 경우가 희박하다. 이는 차후 별도로 규정 하겠다.

질의 : 구내교환기의 형식승인시 정류기와 BATT 도 같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응답 : 정류기와 BATT 는 형식승인 대상품목이 아니다. 정류기등은 국가권고표준을 정하여 적합인증제도로서 인증하겠다. TTA 에서 이러한 표준을 제정하여 국가표준 인정신청을 하면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겠다.

질의 : 통신용케이블에 대해서도 형식승인이 필요한가?

응답 : 케이블 뿐만 아니라 가입자보호기, 국선단자함등도 형식승인 대상품목임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 7월 1일부터 형식승인이 변경 시행되는데 이전에 형식승인을 들판한 제품도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응답 : 형식승인 기준이 변경되었음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 1년의 개선기간을 준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겠다.